

자동차 보험사고 지연신고 개선방안연구
-사업용화물자동차를 중심으로-
Improvement of the delay declaration of the
traffic insurance accident
-focus on a business truck-

이 석 현* · 정 재 정** · 이 중 은*** · 권 영 진**** · 강 경 식*****
Seog-hyeon Lee* · Jae-jung Jung** · Jong-eun Lee***
Young-Jin Kwon**** · Kyong-Sik Kang*****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the delay declaration of the traffic insurance accident which is focused on a business truck causing the traffic insurance accident. The type of the delay declaration is classified as 15 types and it differs in level of payment of insurance money. It is most important that the support policy of government and the self-help of related business to reduce the delay declaration and pursue progressive solution. Moreover, it is essential not only introducing the strict regulation system but also adapting the various victim protection system.

Keyword: traffic insurance accident, delay declaration

*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
** (주)카멜 대표이사
*** 한국산업안전지원 (주) 대표이사
**** 명지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박사과정
***** 명지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교수

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자동차 보험은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그 손해를 담보하는 보험이다. 보험자와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체결 시 담보범위를 정하여 보험 계약을 한다. 책임 기간 중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 계약자는 지체 없이 서면 등으로 그 사고 사실을 알리도록 되어 있다. 대개, 보험 계약자는 정해진 사고신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으나 일부의 보험 계약자는 그 의무를 소홀히 하여 보험사고 발생 사실을 뒤늦게 알림으로써 다툼이 발생하고 자동차보험 인식도 부정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본 연구는 자동차 보험사고 지연신고에 따른 보험금 누수가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 분석하고 그 실태를 제시함으로써 사고야기 운전자 등이 자동차 보험사고 신고를 신속히 이행토록 하여 자동차 보험사고 지연신고를 줄이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한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사업용화물자동차 보험사고를 대상으로 자동차 보험사고 지연 유형을 분석하고 그 유형별 보험금 지급 내용을 기준으로 신고지연에 따른 보험금의 증가 또는 감소 실태를 확인하여 이에 따르는 지연신고 개선 방안을 찾고자 한다.

본 연구는 총 5장으로 구성하였고 제 2장에서는 자동차 보험사고 처리 절차를 살펴보고 제 3장에서는 자동차 보험사고 지연신고 유형을 분석하고 그 분석 결과를 기준으로 각 지연신고의 유형별 보험금 지급 증감 실태를 분석하였으며 제 4장에서는 분석 결과에 따른 지연신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제 5장을 결론 및 향후 연구 방향으로 하여 마무리하였다.

2. 자동차 보험사고 처리절차

2.1 보험사고의 발생사실 신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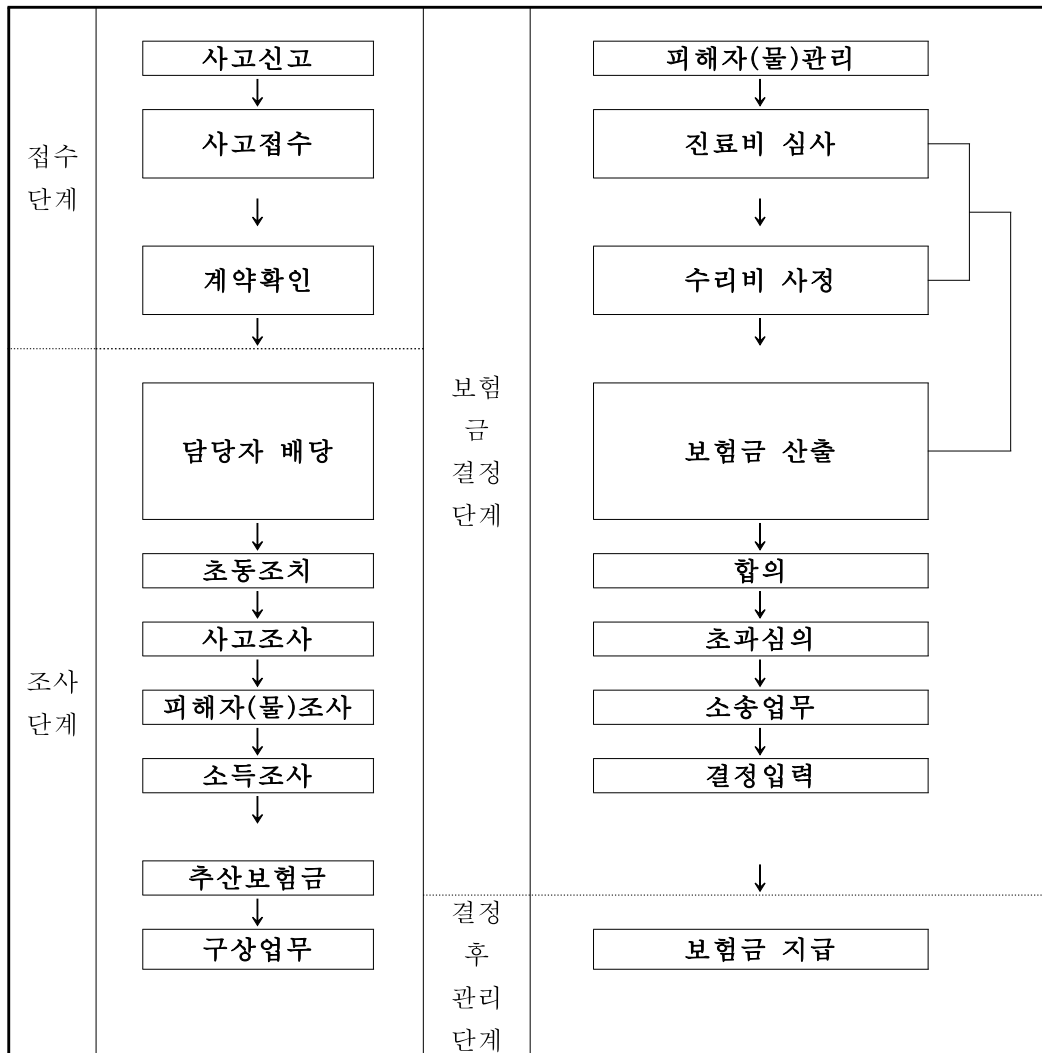
자동차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야기 운전자 또는 피해자 측에서 그 내용을 지체 없이 당해 보험회사로 신고하게 되어 있다. 사고발생신고를 받은 보험회사는 계약 내용을 확인하고 계약 내용에 따라 사고처리 담당자에게 사고 처리를 배당한다. 사고가 발생하면 발생 사실의 신고 절차가 진행되는 등 피해자는 병(의)원의 보호와 치료를 받게 되고, 피해물은 해당 수리처에 입고되거나 원상 복구의 절차를 밟게 된다. 사고처리 배당을 받은 보험회사 담당자는 사고발생내용조사, 피해자조사, 피해물 조사 등의 과정을 밟아 보험금을 지급한다. 지연신고의 경우에도 위와 같이 동일한 절차가 이행되며 때로

는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책임소재 다툼에 따라 피해자 측에서 보험회사에 손해보상을 직접 청구하거나 또는 가해자 측이 보상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보험자에게 청구하는 경우도 있다. 분쟁이 심화되는 때에는 민사소송절차를 거치기도 한다.

2.2 보험금의 지급

보험사고 조사가 마무리되면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금이 확정되기 전에도 가지급 보험금을 지급한다. 그 업무처리 흐름도는 <표 1>과 같다.

<표1> 업무처리 흐름도



3. 자동차 보험사고 지연신고 유형 분석

3.1 담보유형 및 적용기간

자동차 보험사고 담보유형은 대인, 대물 사고를 기준으로 하였고 적용기간은 2012년 사고 중 2개월간을 추출하여 분석하였다. 담보유형별 인원과 피해물건은 <표 2>와 같다.

<표 2> 담보유형별 현황

구분	대인사고(명)	대물사고(건)	계	비고
명, 건수	527	1,208	1,735	

3.2 산출기준

- 지연신고유형 : 15유형으로 구분(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확인)
- 지연신고기간 : 사고건별 사고발생부터 신고 시까지의 기간(사고발생당일을 “0”으로 계산)
- 대상건수 : 해당 기간 중 접수된 인원 명수 및 물건 건수
- 지급보험금 : 대상 기간 60일 + 경과기간 50일 계 110일 중 지급된 보험금

3.3 지연신고유형(15유형)

지연신고 유형은 <표 3>과 같으며 정상 신고도 포함되어 있다.

<표 3> 지연신고 유형(15유형)

유형	지연 신고 유형	비고
A.	당해 운수회사 관련서류 미비로 사고신고 지연	
B.	운전자(차주)가 자기 부담금을 당해 운수회사에 입금지연을 이유로 운수회사가 사고신고 지연	
C.	경미한 사고로 판단한 운전자가 자체처리하려다 합의가 안 되어 지연 신고	
D.	운전자가 사고를 인지 못하고 있다가 뒤늦게 경찰서로부터 사고 내용 연락받고 신고	
E.	타 보험사가 선 처리 구상 청구 들어와 신고	
F.	사고차량 운전자가 사고접수를 회피하여 뒤늦게 피해자가 직접청구	
G.	가. 피해자가 서로 분쟁하다 뒤늦게 소송 들어와 신고	
H.	최초 대물 사고신고 후 뒤늦게 피해자 요청으로 대인 사고 추가 신고	
I.	적재물사고 발생 후 피해금액 확인 늦어져 뒤늦게 신고	
J.	운수회사와 운전자(차주)간 내부 부담금 문제로 인해 사고신고 유보하다가 지연 신고	
K.	운전자와 연락이 안 되어 구체적인 사고 내용을 모르고 있다가 신고	
L.	가. 피해자 간의 책임에 대한 분쟁이 길어져 신고지연 (과실여부 확인하다)	
M.	주말, 휴일 현장출동하고 가신고 되었으나, 정상 근무 시(월요일, 휴일 익일) 지연 신고	
N.	현장에서 괜찮다 하였으나 뒤늦게 피해자 측으로부터 신고요청 (피해자가 연락 준다고 한 후 기다리다가 늦게 연락을 받고 신고)	
O.	사고 발생 시 현장에서 사고신고 및 기타(정상신고 및 기타)	

3.4 유형별 신고 일수 현황

유형별 신고 일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유형별 신고 일수 현황

유형	2일 이내	3~4	5~7	8~10	11~15	16~20	21~30	2~3 개월 이내	4개월 초과	합계	평균 일수
A.	4	6		1	1					12	3.9
B.	9	5	3	2		1				20	4.5
C.	29	54	39	15	11	5	7	1		161	6.5
D.	1	4	1	3			2	1		12	11
E.									1	1	130
F.				1			2	1		4	22
G.		1							3	4	544
H.		1								1	3
I.	3	5	5	2	2	1	1	3		22	14.6
J.										.	
K.										.	
L.	5	5	2		2			2	1	17	16.3
M.	177	83								260	2
N.	4	10	11	5	4			3		37	8.9
O.	1,180	1	2				1			1,184	0.36
점유 율	81.4	10	3.6	1.7	1.1	0.4	0.7	0.6	0.3	100	
합계	1,412	175	63	29	20	7	13	11	5	1,735	3.3

3.5 지연신고 유형별 현황

지연 신고 유형 별 현황은 <표 5>와 같다.

<표 5> 지연신고 유형별 현황

유형	지연 신고 유형별 내용	발생건수	점유률	평균접보일
A, B	운전자(차주) 자기부담금 운수회사에 입금 지연 및 관련서류 미비(운전면허, 자동차등록증, 지급 청구서등)로 신고	19	5.8	5.9
C	경미한 사고로 자체 처리하려다 합의가 안 되어 뒤늦게 신고	132	40.8	7.5
D, E, F, G, H, J, K	기타 유형(피해자 직접청구, 소송제기 후 신고, 타 보험사의 구상 등)	21	6.5	120.5
I	적재물사고 발생 후 피해금액 확인 늦어져 뒤늦게 신고	19	5.8	16.7
N	현장에서 괜찮다 하였으나 뒤늦게 피해자 측으로부터 신고요청(피해자가 연락 준다고 한 후 기다리다 늦게 연락받고 신고)	33	10.2	9.8
M	주말, 휴일 현장 출동하고 가 신고 되었으나, 정상근무(월, 휴일익일)지연신고	83	25.7	3
L	가. 피해자간의 책임에 대한 분쟁이 길어져 지연신고 (과실여부 확인하다)	12	3.7	22.3
O	사고 발생 시 현장 사고신고 및 기타	4	1.2	12
	합 계	323	100	15.05

3.6 유형별, 담보별 지급보험금 현황

사고 유형 15유형 중 비슷한 유형끼리 묶어 7(A, B, C, I, L, M, N, O)유형으로 구분하였고, D, E, F, G, H, J, K 항목은 평균 신고일이 120.5일로 분석기간 중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아 제외하였다.

담보 범위는 대인, 대물로 구분하였다.

유형별, 담보별 지급보험금 현황은 <표 6>과 같다

<표 6> 유형별, 담보별 평균 보험금 현황

유형	담보	2일 이내		3일 이상		평균보험금 차액(C=B-A)	비 고
		건수	평균보험금(A)	건수	평균보험금(B)		
A,B	대인	3	1,356,223	3	1,481,597	125,374	
	대물	10	1,264,771	16	1,488,286	223,515	
C,	대인	6	1,111,486	17	1,384,763	273,277	
	대물	23	1,764,049	115	1,238,189	△525,860	
I	대인						
	대물	3	500,000	19	1,690,892	1,190,892	
L	대인	2	2,188,455	2	745,000	△1,443,455	
	대물	3	300,000	10	519,738	219,738	
M	대인	59	1,198,231	22	1,474,173	275,942	
	대물	118	2,015,374	61	1,577,431	△437,943	
N	대인	1	1,560,000	4	974,025	△585,975	
	대물	3	3,155,667	29	1,034,710	△2,120,957	
O	대인	407	1,429,662				
	대물	773	2,000,996	4	1,387,500	△613,496	
합 계	대인	478	1,399,131	50	1,353,506	△45,625	
	대물	934	1,990,860	273	1,326,768	△664,092	

3.7 분석결과

지연신고 유형은 15유형(정상신고 포함)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바 2일 이내 1,412건(81.4%), 3일 이상 경과 후 신고 323건(18.6%)으로 나타났다. 지연신고 유형 323건 중 유형C 경미한 사고로 자체처리 하려다 합의가 안 되어 뒤늦게 신고한 132건(40.8%)은 사고야기 운전자 또는 당해운수회사의 보험료 할증부담, 서비스마인드 결여로 귀결되며 유형M 주말이나 휴일 사고는 지연신고가 될 소지가 크고 83건(25.7%)이 해당되어 홍보를 통한 해소가 필요하다고 본다. 유형N 사고초기에는 이상이 없거나 피해자 측이 연락을 준다며 기다리던 중 신고지연이 33건(10.2%)으로써 2일 이내 신고사고의 평균보험금보다도 적은 특이한 점이 도출된다.

피해자 직접청구, 소송 제기되어 신고, 피구상 등의 항을 묶은 D, E, F, G, H, J, K 유형은 피해자의 민원제기가 예상되어 당해 손해보험사도 집중관리가 필요하고, 서류미비A, B, 피해금액 확인지연 I는 가해자와 보험사간의 긴밀한 협조가 있어야 되며, 가해자와 피해자간 과실확인이 늦어져 신고 지연 된 L유형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유형이다. 유형별, 담보별 지급보험금을 분석한 결과, 운전자 등의 자기부담금 입금지연과 관련서류미비로 지연신고(A, B유형)되면 대인, 대물 모두 지급보험금 과다로 나

타나고, 경미한 사고로 인식한 유형C, 주말이나 휴일이 겹쳐 늦어지는 유형M의 경우도 보험금 გადა지출로 나타난다. 유형I 피해물 확인 지연은 평균지급보험금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 초동조사 중요성을 시사한다. 책임소재의 분쟁이 길어져 지연되는 유형L 역시 대물보상금이 높게 책정되고 유형N 사고초기에는 이상이 없거나 피해자 측이 연락을 준다고 하여 기다리던 중 신고지연 33건(10.2%)은 대인, 대물 공히 보험금 감소로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사고가 경미하거나 피해자의 과실이 많아 과잉치료지양, 편승수리자제, 대차사용자제 등으로 분석된다.

통계특성상 자료집적 정도에 따라 신뢰성이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4. 지연신고 개선방안

한나라의 수준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의 척도에 따라 차이가 나며 보험신고 지연에 따르는 문제 역시 보험문화의 발전 정도와 연계하여 접근할 과제이다. 자동차보험사고 신고지연에 따르는 문제를 사업용화물자동차를 대상으로 분석해 본바 사고를 직접 야기한 운전자의 의식수준과 관련 운수회사의 대응방식이 가장 중요한 점으로 인식된다. 보험기능은 사고 신고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홍보하고 계도하는 기능이 우선되어야 한다. 가, 피해자간의 다툼이 계속되고 그 결과 신고가 지연되면 보험금의 누수와 뒤이어 보험료 증가로 나타나 쌍방의 불이익이 초래된다.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신고하고 즉시 대응하는 시스템이 정착되기 전에는 이런 분쟁이 계속될 것이므로 정부의 지원과 보험회사의 홍보도 중요한 요소이다. 피해자 보호 제도인 No-fault제도의 도입검토, 과실비율산정의 단계 축소 적용, 과잉진료, 과잉편승 수리 규제제도 도입도 필요한 시점이다.

5. 결론 및 향후 연구방향

자동차보험사고 지연신고는 가해운전자의 의식과 직결되어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신고하도록 교육과 홍보를 병행하고 보험문화 발전을 위한 정부, 보험사의 역할도 법제화 되어야 할 것이다. 지연신고의 구체적인 유형에 착안하여 해소방안을 강구하고 지연신고 불이익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6. 참 고 문 헌

- [1] 김하곤 2011 자동차 공제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2] 자동차보험 실무참고서
- [3] 교통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